

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하공동구는 전력·통신 등 국가 및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이 수용된 시설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특성상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므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운영이 필요함
- 나. 안정적이고 공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
-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1) 추진근거
- 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26조(재계약)
- 다) 「구미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」 제10조(공동구의 관리위탁)
- 2) 필요성 : 지하공동구는 보안등급 ‘다’급 시설로 전력, 통신, 상수도 등

국가 기반시설이 집약되어 있으며 시설 정보와 운영 정보
의 유출 방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전반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

1) 소재지 : 원평동 787-9번지 ~ 송정동 504번지 일원

2) 규모

구 조	길이	높이	폭	연면적	출입구	분기구	맨 홀
철근 콘크리트	1,530m	3.0m	4.5m	6,885㎡	5개소	15개소	22개소

3) 점용시설

점용기관	점용면적	점용비율	시 설 현 황
한전 구미지점	3.84㎡	44.44%	• 전력케이블 (22.9kV×2회선) L=3,600m • 통신광케이블(1회선) L=5,194m
(주)KT 구미지사	2.40㎡	27.78%	• 통신케이블(130,800회선) L=1,262km
구미시 수도과	2.40㎡	27.78%	• 상수도 관로(150 ~ 300mm) L=1,400m

4) 위치도



마.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

(단위 : 천원)

해당년도	계	인건비	직접비	기타	비고
2027년	828,392	528,688	152,575	147,129	
2028년	865,343	555,122	158,678	151,543	
2029년	905,579	582,878	166,612	156,089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6년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(‘26.7.30.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구미도시공사)

3. 부서의견

- 구미도시공사는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하공동구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화재·침수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 유지가 가능하고 시설물 정기점검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- 시설 운영의 연속성, 공공성 및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미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함으로서 국가중요시설인 지하공동구를 체계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26조(재계약)

(3) 「구미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」 제10조(공동구의 관리위탁)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6.7.30.)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○ 2026년 지하공동구 성과평가 및 자체감사 시행('26.7.28.)

○ 성과평가 및 자체감사 결과 : 적정

성과평가 결과서

1. 평가개요

- 평 가 일 : 2026. 7. 28.(화)
- 대 상 :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
- 위탁기관 : 구미도시공사
- 대상기간 : 2025. 1. 1. ~ 12. 31.
- 평가내용 :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전반
- 평 가 자 : 2명(철도팀장 및 담당자)
- 평가방법 : 평가표에 따른 부서 자체평가
- 평가항목 : 2개 분야 7개 항목

2. 평가결과 및 총평

- 평가결과 : 적정

총점 (100)	공통분야(40)				개별분야(60)		
	사업계획 (10)	인력관리 (10)	예산관리 (10)	성과관리 (10)	안전관리 (20)	사업성과 (20)	유관기관 (20)
92	10	10	10	10	20	20	12

- 총평 : 점유시설 및 유관기관 담당자 현행화가 부분적으로 부족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및 인력, 예산,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

자체감사 결과서

- 사 업 명 :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
- 감 사 자 : (부서) 도로철도과 (직급) 철도팀장 (성명) 이승찬
(부서) 도로철도과 (직급) 시설7급 (성명) 장승엽
- 감 사 일 : 2026. 7. 28.(화)
- 감사방법 : 감사표에 따른 부서 자체감사
- 감사결과 : 적정(5개 분야)
- 기타사항 :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협약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

분 야	감사내용 (검토 또는 조치사항)	감사의견		
		적정	보통	부적정
1. 규정준수	· 위·수탁 협약서 준수 여부 · 위탁 업무 관련 법령, 조례, 지침 준수 여부	○		
2. 재무·회계 관리	·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· 위탁금 용도 외 사용 여부 (목적 외 사용 등) · 지출증빙서류 첨부 적정 여부 · 사업 및 예산 집행 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 여부 · 대금 지급 등 이체 상황 확인 등	○		
3. 조직관리	· 근무형태 및 근무 상황 확인 등	○		
4. 민원관리	· 건의사항, 민원사항 처리 등	○		
5. 문서관리	· 수탁사무 추진 관련 문서 관리 실태 점검 등	○		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

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·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~ 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제26조(재계약)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공위탁 선정위원회 또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□ 「구미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」

제10조(공동구의 관리위탁)

- ①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위탁·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·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.

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인건비 등은 구미도시공사 주차시설팀 내 지하공동구 부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하였음

나. 일반운영비 등은 공공요금 납부, 시설 수리수선 등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 위주로 산정하였음

다. 기타는 유지관리시설 정비, 4대보험 등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부서운영금 위주로 산정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2027년	2028년	2029년	합계
세출	○ 인건비 등	528,688	555,122	582,878	1,666,688
	○ 일반운영비 등	152,575	158,678	166,612	477,865
	○ 기타	147,129	151,543	156,089	454,761
	합 계	828,392	865,343	905,579	2,599,314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2027년	2028년	2029년	합계
국 비		-	-	-	-
도 비		-	-	-	-
시 비		828,392	865,343	905,579	2,599,314
민 간		-	-	-	-
기 타		-	-	-	-
합 계		828,392	865,343	905,579	2,599,314

5. 부대의견 : 연간 위탁금액은 사업계획, 예산심의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도로철도과 철도팀 장승엽(☎480-5468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금액 (천원)	산 출 근 거
합 계	2,599,314	
2027년	828,392	○ 인건비 등 528,688천원 - 보수(일반직,공무직), 퇴직급여, 평가급및성과급 등 ○ 일반운영비 등 152,575천원 - 일반운영비, 수선유지교체비, 동력비 등 ○ 기타 147,129천원 - 공동구 유지관리시설 정비(환기, 통신설비 등) - 지원부서운영금
2028년	865,343	○ 인건비 등 555,122천원 - 보수(일반직,공무직), 퇴직급여, 평가급및성과급 등 ○ 일반운영비 등 158,678천원 - 일반운영비, 수선유지교체비, 동력비 등 ○ 기타 151,543천원 - 공동구 유지관리시설 정비(환기, 통신설비 등) - 지원부서운영금
2029년	905,579	○ 인건비 등 582,878천원 - 보수(일반직,공무직), 퇴직급여, 평가급및성과급 등 ○ 일반운영비 등 166,612천원 - 일반운영비, 수선유지교체비, 동력비 등 ○ 기타 156,089천원 - 공동구 유지관리시설 정비(환기, 통신설비 등) - 지원부서운영금

소 관 부 서		도로철도과
입 안 자	과 장	장영재
	팀 장	이승찬
	담 당 자	장승엽 (480-5468)